

研究論文

大韓帝國期 宮內府 大禮服 研究*

崔圭順**

- | | |
|--------------------------------------|--------|
| I. 머리말 | V. 맺음말 |
| II. 宮內府 官制와 성격 | <참고문헌> |
| III. 宮內府 大禮服 | <국문요약> |
| IV. 宮內府 大禮服과 藏書閣 所藏 『官服章圖
案』과의 관계 | |

I. 머리말

朝鮮時代의 정부조직은 ‘國王—議政府—六曹’ 체제로 구성되었고, 國政事務와 王室事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체제는 국왕의 전제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이에 甲午改革期에 새 질서 정착을 위한 작업의 하나로 의정부와 각 衙門을 근대적인 행정기구로 개편하면서 왕실사무를 국정사무에서 분리시켜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 1894년(高宗 31)에 의정부와 별도로 왕실사무를 전담하는 宮內府가 설치되었고, 이는 행정과 재정에 있어 국가와 왕실 관련기구와의 이원화를 의미하였다.

* 본 논문은 한국복식학회 2007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 되었고, 영문초록 “A Study on Court Dress in Gungnaebu of Korean Empire”가 초록집 *International Costume Conference-Globalization & Future of Korean Costume 2007*(The Korean Society Costume, 2007.10)에 수록되었음을 밝힙니다.

** 檀國大學校 傳統服飾研究所 責任研究員, 韓國 및 中國 服飾史 전공(bbaneul@hanmail.net).

우리의 전통 衣生活은 大韓帝國期에 큰 변혁을 맞아 오랫동안 중국식 服制를 준용하던 官服이 이 시기에 洋服으로 바뀐다. 또 이러한 복식 형태상의 변화 외에 정치체제의 이원화에 따라 직분을 달리하는 관원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관복 역시 차별화 될 필요성을 낳는다.

대한제국을 前後한 시기의 의생활에 대한 자료는 문헌·그림과 사진·유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있으며, 197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¹⁾ 그러나 先行研究에서는 정치체제의 이원화에 따라 나타나는 복제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았다. 즉 체제가 이원화됨에 따라 소속된 관원의 복식 역시 이원화 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일반관부와 궁내부 소속 관원의 복식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궁내부 관복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던 데에 기인한다.²⁾ 이에 본고는 궁내부 관복 중 大禮服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내용은 궁내부 官制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외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본 연구는 궁내부 관원과 일반 관원의 대례복을 구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 변화과정을 살펴 兩者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학계에 소개한 藏書閣 소장 『官服章圖案』 중 No4373·4375³⁾와 궁내부 대례복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No4373 중의 일부 복식과 No4375에 표현된 복식이 궁내부 대례복과 관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그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⁴⁾

- 1) 이 시기에 대한 연구현황은 崔圭順·김은정의 「開港期에서 日帝强占期 의생활연구의 현황과 전망」, 『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제1회 학술발표회 논문집』(2007), 25~72쪽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
- 2) 지금까지 궁내부 소속 관원의 복식을 주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없었고, 최근 崔圭順의 「藏書閣 소장 『禮服圖』 研究」, 『전통의생활연구』, 第1輯(檀國大學校 傳統服飾研究所, 2007), 125~150쪽가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禮服圖』는 궁내부 主馬課 소속 御者[馭者]의 복식을 그린 것으로, 연구를 통해 1908년(隆熙 2) 4월 23일 제정된 ‘御料馬車御者以下服制’의 부속 圖本임이 제기되었다.
- 3) 『官服章圖案』은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No4372~4375의 총4종류가 있다. 1900년 이후의 서양식 관복 채용과 관계되는 것이고, 유일본 자료로 파악된다. 이 자료의 존재는 崔圭順·김은정의 「開港期에서 日帝强占期 의생활연구의 현황과 전망」(앞의 논문, 57~69쪽)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 4) 1900년대 궁내부 대례복의 형태는 문관복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있고, 도록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다. 복식에 대한 이해는 시각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형태의 자세한 규명에 목적을 두지 않고 또 지면의 한계도 있어, 그림 자료의 제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선행연구 및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金美

궁내부는 1894년 설립되어 1911년 2월에 폐지되고, 이후에는 李王職이 그 업무를 잇는다. 본고는 이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하나, 1911년 4월에 이왕직 직원의 복장과 일반 문관의 대례복 착용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때까지 포함시킨다. 시간적으로 약간의 전후차가 있지만 논문의 주 연구대상 시기가 대한제국이므로 제목에서 편의상 ‘대한제국기’라 하였다. 대한제국기 궁내부관원의 대례복은 親·勅·奏任官⁵⁾만 입을 수 있고 判任官 이하의 하급관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또 警官과 武官은 별도로 규정된 복장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궁내부 대례복’이라 함은 궁내부 소속의 친·척·주임관 중 경관과 무관업무에 종사하던 者를 제외한 관원의 대례복을 말하며, 넓게는 1894년 12월 이후부터의 전통식 복식을 포함하고, 좁게는 1900년 이후의 서양식 복식을 의미한다. 연구의 자료는 선행연구 외에 『實錄』, 『官報』, 『宮內府規例』, 『法規類編』 등의 문헌과 사진·유물·장서각 소장인 『관복장도안』 등을 참고하였다.

대한제국기의 서양식 복식 규정 및 착용은 단순한 외래문명 수용을 넘어서 우리의 전통 생활양식을 아만시하고 서구문화를 소개·강요하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미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⁶⁾ 따라서 복제 연구는 이 시기의 시대적 성격을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宮內府 官制와 성격

궁내부는 갑오개혁기 봉건왕실을 국가기구로부터 분리하고 국왕의 정무간여를

子, 「開化期の 文官服에 對한 研究」, 『服飾』, 創刊號(1977); 李美娜, 「朝鮮時代後期 文官服 變遷에 對한 考察」, 『文化財』, 18號(1985); 柳喜卿·李康七·許東華·李順子, 『大韓帝國時代 文武官服飾制度(大韓帝國時代 文物展 카타로그 附錄)』(韓國刺繡博物館 出版部, 1991); 경기도박물관, 『(박영숙·허동화 소장 자수특별전)실로 갖는 꿈: 황홀한 우리 자수』(경기도박물관, 2004).

- 5) 조선의 모든 관료는 文官[東班]과 武官[西班]으로 구분되었고, 이들은 正·從 각9품의 총18품계로 각 관등의 품계를 일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기에 1·2품만 正·從을 구별하고 3~9품은 구별을 폐지하여 총11품계로 축소하였다(『法規類編』 規制門 ‘敍品’ (隆熙2年 刊行 『法規類編』, 23쪽): “五百三年 七月二日 朝官品級 自一品至二品 有正有從 自三品至九品 無正從之別”). 또 이들 품계에 대한 명칭을 바꿔 正·從 1·2품은 勅任官, 3~6품은 奏任官, 7~9품은 判任官으로 하였다(宋炳基·朴容玉·朴漢高(共編), 『韓末近代法令資料集』1, 「議案 文官授任式」 1894년 7월 14일; 『官秩』 1894년 7월 16일).
- 6) 이왕무, 「대한제국기 純宗의 南巡幸 연구」, 『정신문화연구』, 30권 2호(2007), 86쪽.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개화파의 立憲君主制적 정치체제 변혁 구상에 의해) 1894년 6월 28일 ‘議政府官制’ ‘各衙門官制’와 함께 「宮內府官制」⁸⁾가 반포되면서 설치되었다. 이는 같은 해 12월 12일에 공포된 洪範14條 중 “왕실에 관한 사무와 나라 정사에 관한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서로 뒤섞지 않는다”⁹⁾는 조항에서 강조된다. 이리하여 왕실과 국가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궁내부 소속관원과 일반 국가기구인 各府衙門의 관원은 상호 겸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봉건왕실과 국가가 곧 일체로 생각되어 온 대 전제가 무너지면서 국왕의 정치적 위상이 상당 부분 허구화 되었으며, 정치의 권력은 제도적으로 의정부 총리대신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나 총리대신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해도 의정부의 지위가 근대적인 內閣과 같이 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국왕의 국정 간여는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궁내부는 설치 이후 크게 1895년(고종 32) 4월·11월, 1899년(光武 3), 1907년(隆熙 元年)에 개정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상황에 따라 군주권을 제한하는 도구로, 또는 군주권 강화의 도구로 사용된다. 특히 建陽年間(1896~1897년)부터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대한제국이 출범한 1899년 무렵에는 황제권 강화의 목적에 따라 의정부 이상으로 비대화된다. 이후 1907년에 이르러 많은 산하기구가 폐지되면서¹⁰⁾ 기능도 축소된다.

궁내부는 일제강점기에 李王職이 설립되어 왕실업무를 관장하면서 폐지된다. 이 왕직의 官制는 일본 ‘황실령 제34호’로 1910년 12월 30일에 발표되었다. 다음해 1월 30일에는 대한제국의 궁내부 소속 직원 326명 모두가 해직과 함께 업무를 정지당한 후, 2월 1일부터 이왕직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나머지 고용직에 있었던 340여 명도 해직 당한다.¹¹⁾

7) 徐榮姬, 「1894~1904년의 政治體制 變動과 宮內府」, 『韓國史論』, 23(1990), 328쪽.

8) 『法規類編』 第1卷 官制門 第1類 宮內府 「宮內府官制」; 內閣記錄課, 『法規類編』(1908), 2쪽. “(大臣官房)五百三年六月二十八日 宮內府를 設호고 所屬院·廳·閣·司·寺를 定호야 度支衙門으로 收支를 掌케 함.”

9) 『高宗實錄』 31年(1894) 12月 12日 「洪範」: “...一王室事務與國政事務 須卽分離 毋相混合.”

10) 궁내부 소속의 관제는 주로 1907년에 폐지되는데 참고자료로 1908년 간행 『法規類編』 第1卷 官制門 附 「廢止官制」; 內閣記錄課, 앞의 책, 1~69쪽이 있다.

11) 이상 주요 출처: 『法規類編』 「宮內府官制」; 內閣記錄課, 앞의 책, 1~393쪽; 宮內府大臣官房調查課, 『宮內府規例』(1910); 徐榮姬, 앞의 논문, 327~396쪽; 吳蓮淑, 「大韓帝國期 宮內府特進官의 運用」, 『史學志』, 31輯(1998), 377~387쪽; 이옥,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 1894~1908

III. 宮內府 大禮服

궁내부 소속 관원의 대례복은 크게 전통식 복제 유지시기와 서양식 服制 채용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서양식 복제 채용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후의 형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1. 전통식 服制 유지(1894. 6~1900. 4)

완전한 서양식 복제를 채용하기 이전에 高宗은 전통식 복식의 간소화에 대해 여러 차례 명을 내린다. 비록 초기에는 잘 시행되지 않았고 또 신하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고종의 의지는 서서히 실질적인 복식의 간소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 문무백관의 복식의 간소화는 1884년(고종 21)의 갑신외척개혁에서부터 시작한다. 官服으로 朝·祭服 외에는 窄袖의 黑團領만을 입게 하였고, 크고 작은 朝儀에 進見할 때와 대궐 안팎에 공적인 일[公故]이 있을 때에는 胸背를 달아서 문관과 무관의 品階를 구별하도록 하였다.¹²⁾ 또 관원의 私服은 窄袖衣에 戰服[搭護]을 덧입은 후 絲帶를 매도록 하였다.¹³⁾ 그러나 당시 고종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반포된 후 반대의견이 매우 강하였고, 10년 후인 1894년에 다시 의복의 간소화가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⁴⁾

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7권 2호(2004), 62쪽.

12) 『高宗實錄』 21年(1884) 閏5月 24日.

13) 『高宗實錄』 21年(1884) 閏5月 25日; 6月 3日 「私服變制節目」.

14) 갑신외척개혁은 5월 24일 흑단령 착용에 관한 고종의 傳敎로 시작되어, 6월 3일에 禮曹에서 ‘私服變制節目’을 마련하여 당일 고종의 비준을 얻고, 7월 10일 이후 새 제도를 적용하여 廣袖衣를 입지 못하게 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高宗實錄』에 의하면 고종의 전교 이후 절목이 반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7월 27일까지의 두 달 사이에 약 24건의 반대 상소가 올라오고, 절목을 마련해야 할 예조에서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절목에서 道袍·直領·弊衣·中衣 등을 입지 못하게 하였으나 6월 21일에 領議政 金炳國의 건의에 의해 도포는 제사를 드릴 때나 弔問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락하도록 바꾸기도 한다. 따라서 비록 고종의 개정안에 찬성하는 몇 차례의 상소가 6월 6일 이후부터 있었고, 반대의견에 고종이 罷職으로 대응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대세는 아직 옛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었다. 『高宗實錄』 21年(1884) 閏5月 25日~7月 27日; 『法規類編』 「衣制」; 內閣記錄課, 앞의 책, 305쪽: “文官服裝規則: 五百三年六月二十八日 奏定朝官

실질적인 관복의 간소화는 1894년 갑오경장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6월 28일에 軍國機務處에서 올린 議案에 근거해 관원이 폐하를 알현할 때의 관복은 紗帽·章服(盤領窄袖)·品帶·靴의 차림으로, 燕居 때의 사복은 漆笠·답호·絲帶로 하였다.¹⁵⁾ 이 날은 일반관부와 별도로 궁내부를 설치한 날로써 비록 궁내부관원의 복식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일반사무와 왕실사무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았던 전통으로 보아 궁내부관원 복식은 일반관복과 구별이 없었을 것으로 본다.¹⁶⁾

같은 해 12월에는 칙령 제17호가 내려지는데 이 때 ‘대례복’ 용어가 등장한다. 당시 관원의 대례복은 흑단령을, 寢에 들 때의 통상예복은 사모·周衣·답호·靴를 입도록 규정하고, 다음 해 설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¹⁷⁾ 당시 궁내부관원 역시 이 제도를 적용받았을 것이다.

궁내부관원의 복식이 명확히 규정된 것은 1895년 8월의 乙未服章式에서 인데 이때 일반관원 복식과 한 틀로 규정되어 서로 같은 옷을 입음이 확인된다. 즉 당시 ‘宮內府大臣·朝臣以下服章式’ 반포를 통해 조복·제복·대례복·小禮服·通常服色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조복과 제복은 이전의 제도에서 변함없이 梁冠 제도를 유지하였다. 대례복은 사모·흑단령·품대·靴의 차림이며, 動駕·慶節·문안·예의를 갖춰 접견할 때 등에 착용한다. 소례복은 사모·黑盤領窄袖袍·帶·靴의 차림으로, 無時로 진현할 때 입는데 대례복을 입어야 할 상황에서 대신 입어도 무방하다. 內官과 外官이 출근할 때 등에는 통상복색을 입는데 주의·답호·사대 차림으로 한다. 단 진현할 때에는 입지 않는다.¹⁸⁾ 당시 대례복과 소례복은 단령이나 반령이냐의 차이와, 廣袖이냐 窄袖이냐의 차이로 구분하였다.¹⁹⁾

士庶人兵弁衣制 七月十日以後 禁着廣袖衣하고 同十二日 奏定各官員闕內外赴公服色.”

15) 『高宗實錄』 31年(1894) 6月 28日 「軍國機務處進議案」.

16) 6월 28일에 軍國機務處는 議政府 이하 각 衙門의 官制와 職務에 관한 議案을 올리면서 “宮內府의 경우는 소중함이 자별하여 감히 아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직무만 분류하여 초안을 올립니다 (至宮內府 所重迥別 不敢自下擅便 謹將職掌分類草呈)”라 하여 궁내부에 대해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식을 거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高宗實錄』 31年(1894) 6月 28日.

17) 『高宗實錄』 31年(1894) 12月 16日; 『法規類編』 「衣制」; 內閣記錄課, 앞의 책, 305쪽.

18) 『高宗實錄』 32年(1895) 8月 10日.

19) 김미자는 개화기 문관복 유물의 실측을 통해 단령과 반령은 등근것의 과임 정도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이거나 실재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소매너비가 대례복은 약40~48cm, 소례복은 약23.5~32cm임을 밝혔다. 金美子, 앞의 논문, 71쪽.

같은 해 11월에는 斷髮令을 내리면서 고종이 먼저 머리를 깎아 신하와 백성들이 따르도록 하였고,²⁰⁾ 또 內部告示로 衣冠制度에 있어 외국복식을 채용해도 무방함을 공포하였다.²¹⁾ 궁내부 관원들은 단발 등에 있어 누구보다 먼저 황제를 따라야 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상을 알 수 없다. 1897년 8월에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복제는 皇帝國 체제에 맞게 바뀐다. 이러한 변화는 대표적으로 『大韓禮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궁내부관원의 복식은 따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일반관원과 같은 복제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전』에는 신하의 관복으로 조복·제복·대례복·소례복이 제정된다. 제·조복의 冠은 明의 제도와 동등하게 1품-7梁, 2품-6량, 3품-5량, 4품-4량, 5품-3량, 6·7품-2량, 8·9품-1량으로 하였다. 제복은 양관 외에 笏·黑羅衣(黑緣)·赤羅裳(赤緣)·白紗中單·赤羅蔽膝·綬·赤白羅大帶·革帶·珮(佩玉)·白布襪·履²²⁾ 등으로 구성되고, 天地·宗廟·社稷 등에 제사할 때 입는다. 조복은 양관[金冠] 외에 赤羅衣·赤羅裳을 쓰고 나머지 구성은 제복과 같으며, 朝賀할 때 입는다. 대례복은 오사모와 흑단령으로 구성되고, 陪賀·問安·禮接 時에 입는다. 소례복은 團領窄袖袍로 하였고, 進見時에 입는다.

『대한예전』은 대한제국이 출범한 1년 뒤인 1898년 연말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³⁾ 일반 國家典禮書에 비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제작되었고, 이로 인해 체제의 미비나 필사상태의 불량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데 복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²⁴⁾ 또 그 복제의 준용 정도 역시 회의적이긴 하지만 현재 이 시기의 六梁冠 유물이 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제도에 맞게 실시된 사실이 입증되기도 한다.²⁵⁾

20) 『高宗實錄』 32年(1895) 11月 15日.

21) 『高宗實錄』 32年(1895) 11月 15日 「內部告示」.

22) 『大韓禮典』 卷4 「祭服圖說」 ‘群臣冠服’에서 履는 그림만 제시되고 文字로 규정된 사항이 누락되었고, 卷5 「冠服圖說」 ‘群臣冠服’의 朝服 역시 그러하다. 따라서 관원이 제·조복에 신은 신의 명칭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大韓禮典』은 服制의 첫머리에 “光武元年改定 其制取大明會典所載制度者爲多 以下嘉禮冠服亦如之”라 하여 기본적으로 『大明會典』을 따름을 표방하였는데, 『大明會典』 卷61 「冠服2」 ‘文武官冠服’에 의하면 百官의 제·조복에 履를 사용한다.

23) 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35호(2006), 111쪽.

24) 『대한예전』의 복제는 아직 상세한 연구가 없이 관련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있는데, 최규순·김은정, 앞의 논문, 43~47, 67쪽에서 전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후의 연구전망을 제기한 바 있다.

25) 박성실은 「大司憲 鄭寅學(1839-1919)의 六梁冠 小考」, 『대한가정학회지』, 44권 1호(2006), 131~

따라서 궁내부관원 역시 이 복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복을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한예전』에 그림으로 표현된 대례복과 소례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매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대례복은 大袖[광수], 소례복은 착수이다. 그러나 1899(광무 3)년 8월 3일에 “조정에 있는 대소 신료들은 소례복을 착용하되 朝觀·參班·陪從할 때 만 품대를 더하여 대례복으로 삼으라”²⁶⁾한 것으로 보아 대례복과 소례복은 주로 품대의 유무로 더 명확히 구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전통식 관복 유지 시기의 궁내부복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대례복’ 명칭은 1894년 12월의 복제에서 보이기 시작하며, 대한제국 초기까지 변함없이 사모·흑단령·품대·화로 구성된다.

<표 1> 전통식 복제 유지 시기(1894. 6~1900. 4)의 궁내부관원 복제

연대	복장 종류	착용상황	복식구성	신분		비고
				일반 관원	궁내부 관원	
1894.6.28 (甲午)	官服	·	紗帽·章服(盤領窄袖)·品帶·靴	○	●	·
	私服	·	漆笠·搭護·絲帶			
1894.12.16 칙령17호	大禮服	·	黑團領(紗帽·品帶·靴)	○	●	1895년 1월부터 시행
	通常禮服	출근	紗帽·周衣·搭護·靴			
1895.8.10 (乙未)	朝服	·	梁冠制(五梁~一梁)	○	○	·
	祭服	·	梁冠制(五梁~一梁)			
	大禮服	勳駕·慶節·問安· 禮接	紗帽·黑團領·品帶·靴			
	小禮服	無時로 進見; 혹 대례복 대신	紗帽·黑盤領窄袖袍·帶·靴			
	通常服色	출근	周衣·搭護·絲帶			

138쪽에서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에 소장된 鄭寅學의 육량관 유물을 연구하였다. 이에 의하면 육량관은 우리나라에 현재 세 점이 확인되고 있고, 이는 『대한예전』의 복제가 실제로 실시되었음을 반영한다 하였다.

26) 『高宗實錄』光武 3年(1899) 8月 3日.

대한제국 초기 (1897.10 ~1900.4)	朝服	朝賀	梁冠制[七梁~一梁]	○ ● ·
	祭服	황제를 따라 天地·宗廟·社稷 등에 제사할 때	梁冠制[七梁~一梁]	
	大禮服	陪賀·問安·禮接	烏紗帽·黑團領(·品帶·靴)	
	小禮服	進見	團領窄袖袍(紗帽·靴)	

- * 괄호안의 내용은 당시 제도개혁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마땅히 존재하였을 내용이다.
- * 국가제도에 변화가 많은 시기이므로 착용상황은 제도에서 언급한 것만을 정리하였다.
- * 부호 ‘●’는 궁내부가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일반관원과 같은 복제를 적용했다 추정함을 의미한다.

2. 서양식 服制 채용(1900. 4~1910. 4)

서양식 궁내부 대례복은 1900년(광무 4)에 제정된 후, 1906년(광무 10)에 개정되고, 이 제도가 궁내부가 폐지되는 1910년까지 지속된다. 아래에서는 1900년과 1906년의 제도에 대해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근대의 서양식 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 반포 형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복제 규정에는 대체로 ‘~規則’, ‘~製式(혹 ‘服製; 服制; 服式; 規制’라 함)’, ‘~圖式’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규칙’에서는 복식의 종류, 착용신분, 착용상황, 복식 종류별 구성요소 등을 규정한다. ‘제식’에서는 ‘규칙’에서 정한 구성요소의 세부형태, 크기, 장식 등을 문자로 표현하고, ‘도식’은 ‘제식’에서 규정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²⁷⁾ 하나의 대상에 대해 이들 세 제도는 동시에 규정되

27) 제도 형식과 반포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본문에 있는 1900년의 문관에 대한 복장 규정으로 위 세가지 형식이 모두 관보에 반포된다. 그러나 그 밖의 제도는 대개 그 중 일부만 반포된다. 관보에 반포된 것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95년 4월 9일의 칙령 제78호 ‘陸軍服裝規則’이 규정되고, 도식이 부수되나 관보에 생략(『舊韓國官報』(影印本)2 (亞細亞文化社, 1973), 413~425쪽). 1895년 4월 19일의 칙령 제81호 ‘警務使以下の 服制’가 제정되는데 이 ‘服制’는 ‘製式’에 상당하는 것으로 옷의 세부 형태 규정(『舊韓國官報』2, 위의 책, 507~514쪽). 1900년 7월 2일 ‘陸軍將卒服裝製式’이 규정되고 1904년 10월 13일 改正(『舊韓國官報』9, 위의 책, 938쪽). 1905년 12월 9일 ‘農商工部度量衡臨檢員服式’이 제정되어 옷의 세부형태 규정(『舊韓國官報』15, 위의 책, 1310~1311쪽). 1906년 5월 22일 ‘陸軍服裝規則’이 제정되어 등급별 옷의 종류와 착용상황 등 규정(『舊韓國官報』16, 위의 책, 403~409쪽). 1906년 11월 8일 칙령 제66호 중의 ‘管稅官服裝圖式’ 반포(『舊韓國官報』16, 위의 책, 991~994쪽), 1908년 3월 20일 布達 제173호 ‘東宮職員供奉服規則’ 제정되는데 이 ‘規則’는 ‘製式’에 상당하는 것으로 옷의 세부 형태를 규정하였고, 布

어 一時에 반포되기도 하고,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반포되기도 한다. 또 ‘도식’은 때로 반포가 생략되기도 한다.

(1) 1900年(光武 4)의 宮內府 大禮服

우리나라 최초의 洋服 착용자는 1881년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던 김옥균·서광범·유길준·홍영식·윤치호 등이고,²⁸⁾ 서양식 옷이 官服에 채용된 것은 같은 해에 근대식 군대인 別技軍을 조직하면서였다. 별기군은 근대식 무기를 갖추고 근대식 훈련을 받았으며, 복식 역시 서양식으로 바꾸었다.²⁹⁾ 이후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陸軍服裝規則’과 4월 19일 칙령 제81호 ‘警務使 以下 服制’를 통해 완전한 형태의 서양식 武官服과 警官服 제도가 반포되었다.³⁰⁾

이에 비해 문관복은 1900년 4월 17일에 이르러서야 칙령 제14호 ‘文官服裝規則’과 칙령 제15호 ‘文官大禮服製式’을 통해 서양식 관복을 채택한다.³¹⁾ 궁내부 관복은 ‘문관복장규칙’ 제9조에서 “宮內府와 外各府部院을 勿論하고 大小官人이 本規則에 服從할 事”라 하여 서양식 관복 채용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반문관과 같은 복제를 적용하고 있다.

達 제173호(續)을 통해 도식 제시(『舊韓國官報』16, 위의 책, 403~416쪽). 기타 생략.

28) 유희경·김문자, 『(개정판)한국복식문화사』(敎文社, 1998), 345쪽.

29) 고부자, 『우리생활 100년·옷』(현암사, 2001), 60쪽.

30) ‘陸軍服裝規則’은 第1章 總則, 제2장 佩着通則, 제3장 正裝, 제4장 軍葬, 제5장 禮裝과 附則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육군군인의 복장은 正裝·軍葬·禮裝·常裝의 4種으로 나뉘었고, 각 차림의 세부 형태는 서양식이었다. ‘警務使 以下 服制’는 警務廳에 속한 警務使·警務官(總務局長)·警務官의 常帽·常衣·夏衣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형태는 역시 서양식이다. 『舊韓國官報』(影印本)2, 위의 책, 413~425쪽; 『舊韓國官報』3, 위의 책, 507~514쪽.

31) 문관복은 外交官의 복식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난다. 외교관들은 일반문관의 복제 개혁이 있기 전에 필요에 의해 개인적으로 양복과 혼용해서 입었다. 1876년 제1차 일본사절단의 修信使였던 金綺秀, 1888년 초대 美國公使 朴定陽, 駐美署理公使를 지낸 李夏榮 등은 버선에 구두를 신었고, 駐日本 全權公使 趙兼武는 상투머리에 모자를 쓰고, 버선에 구두를 신고 東京에 부임하였다(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이대출판부, 1977), 628쪽). 한편 1898년 6월 18에 칙령 제20호로 각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의 服章式을 대례복·소례복·상복의 3種으로 정하였는데, 형태는 아직 전통식 복제를 따르고 있다(『고종실록』光武2年(1898) 6月 18日; 『관보』5, 위의 책, 363쪽). 그 후 1899년(광무3) 8월에 외교관은 외국의 규례를 참작하여 개정하도록 정하였다(『高宗實錄』光武3年(1899) 8月 3日: “出疆使臣服飾 爲先參酌外規而改正.”; 『法規類編』「衣制(內閣記錄課, 앞의 책, 306쪽): “文官服裝規則:…(光武)三年八月三日 詔勅으로 出疆使臣服飾爲先參酌外規하고 在廷大小臣僚仍着小禮服 朝觀參班陪從時 但加品帶 作爲大禮服케 함.”

가. 文官服裝規則

‘문관복장규칙’은 1900년에 총12조로 반포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13조로 증가한다.³²⁾ 『관보』에는 반포 당시의 제도가, 『법규유편』에는 1908년까지의 개정내용이 나타난다. <표 2>는 이를 정리한 것이고,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관’의 범위는 ‘武官과 警官을 제외하고 문관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정하였다. 이어 문관복의 종류, 착용신분, 착용상황, 구성요소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문관복의 종류는 대례복·소례복·常服의 세 가지로 나뉜다. 대례복은 칙·주임관만 입을 수 있고, 소례복은 칙·주·관임관이 모두 입는다. 대례복은 임금에 대한 문안, 임금의 거동[動駕], 황태자의 거동[動輿], 공적으로 임금을 알현할 때, 궁중 연회에 참가할 때[宮中陪食; 宮中賜宴] 등에 착용한다.³³⁾ 소례복은 1900년 반포당시에 유럽식 연미복 형태³⁴⁾ 한 종류만 언급되었는데, 1905년(광무 9) 1월 16일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연미복과 후록코트(厚錄高套: frock coat)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처음 연미복 한 종류만 있을 때는 궁궐 안에서의 임금 진현, 공식 연회 참석, 예를 갖추어 上官을 만날 때, 私적인 축하나 위로 등에 입도록 하였다. 후에 두 종류로 개정하면서 연미복은 각국 사신의 폐하 알현이나 궁중 연회 참석 및 內外國 관원의 晩餐에 참가할 때 등에 입고, 후록코트는 궁궐 안에서 임금을 진현하거나 각국의 慶節 賀禮 및 예를 갖춘 사적인 방문 등에 입도록 하였다. 상복은 출근할 때나 한가로이 있을 때, 집무할 때에 착용한다.

대례복을 구성하는 것은 大禮帽·大禮衣·下衣[胴衣]³⁵⁾·大禮袴·劍·劍帶·白

32) 『高宗實錄』光武4年(1900) 4月 17日; 勅令第十四號 ‘文官服裝規則’(『舊韓國官報』8, 앞의 책, 392~394쪽); 『法規類編』「衣制」(內閣記錄課, 앞의 책, 305~311쪽).

33) 대례복은 본래 칙·주임관에게 허락된 옷으로 관임관은 입을 수 없었으므로 관임관이 위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는 부득이하게 소례복을 입도록 하였다.

34) 1900년대 제정된 서양식 대례복과 소례복 상의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깃의 형태이다. 대례복은 접은 깃이 없이 납작한 바닥에 금선을 넣어 이중으로 처리하였고, 소례복은 오늘날의 연미복에서 보듯 접은 깃이다. 둘째, 소매의 형태이다. 대례복은 접은 소매 혹은 덧단을 댄 형태이나, 소례복은 이러한 것이 없다. 셋째, 무늬의 有無이다. 대례복은 상의의 앞길·깃·소매 등에 신분에 따른 무늬가 있고, 소례복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옷의 전체 형태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복제 제정시 소례복 상의는 ‘燕尾服’이라 함에 비해 대례복은 명칭이 없다. 본고에서 내용 서술 중 대례복과 소례복의 상의를 표현함에 있어 “연미복” 혹은 “연미복형” 등으로 언급하였는데 명칭의 앞에 대례복 혹은 소례복이 명시되어 있어 문맥속에서 각각의 경우가 의미하는 옷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布下襟·白色장갑[手套] 등이 있다. 소례복 중 연미복 형태는 眞絲高帽·燕尾服·
 下衣[胸部闊開制]·袴(상의와 같은 색)·鞋로, 후록코트 형태는 진사고모·코트·
 하의[胸部稍狹制]·袴(상의와 다른 색)·鞋로 구성된다. 평상복은 통상의 유럽식
 모자[平帽, 通常帽]와 상의·하의·袴로 구성된다.

<표 2> 勅令14號‘文官服裝規則’

조항	관보(1900년)	개정상황	조항	법규유원(1908년)
제1조	武官과 警官을 除호 外에는 文官으로 被任호 者의 服裝은 左開 三種으로 分호 事. 一 大禮服. 一 小禮服. 一 常服.	.	제1조	左同
제2조	小禮服과 常服은 勅·奏·判任官이 通共 着用호고 大禮服은 勅·奏任官새호 着用호 事.	.	제2조	左同
제3조	大禮服은 左開境遇에 着用호 事. 一 問安時. 一 動駕·動輿時. 一 因公陞見時. 一 宮中賜宴時.	1905(광무9).1.16 제3-9조 개정 (1900년의 제9조 폐지)	제6조	大禮服은 左開境遇에 着用호 事. 一 陳賀時. 一 動駕·動輿時. 一 因公陞見時. 一 宮中陪食時.
제4조	小禮服은 左開境遇에 着用호 事. 一 宮內進見時. 一 公式宴會時. 一 禮拜上官時. 一 私相賀謝時.		제7조	燕尾服은 左開境遇에 着用호 事. 一 各國使臣召接時. 一 宮中賜宴時. 一 內外國官人 晚餐時.
제5조	常服은 左開境遇에 着用호 事. 一 仕進時. 一 燕居時. 一 執務時.		제8조	厚錄高套는 左開境遇에 着用호 事. 一 宮內進見時. 一 各國慶節賀禮時. 一 私相禮訪時.
제6조	大禮服은 左開諸具로 用호 事. 一 大禮帽. 一 大禮衣. 一 下衣. 一 大		제9조	平常服은 左開境遇에 着用호 事. 一 仕進時. 一 執務時. 一 燕居時.
			제3조	大禮服의 諸具는 文官大禮服製式에 依호 事.

35) 대한제국시기 복제에서 下衣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조끼를 말한다. 당시 제도에서는 ‘조끼’는 사용하지 않고, ‘下衣’와 ‘胴衣’를 혼용한다. 예를 들어 1900년 4월 17일의 ‘문관복장규칙’과 ‘문관 대례복제식’에서는 “下衣”라 하였고 도식에도 조끼 위에 “下衣”라 적혀있다(『舊韓國官報』8, 위의 책, 393-394쪽). 그러나 1906년 12월 12일에 ‘제식’을 개정할 때는 “胴衣”라 하였다(『舊韓國官報』16, 위의 책, 1176-1184쪽). 여기에서 ‘하의’는 ‘상의’ 안에 입는 반침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禮袴. 一 劔. 一 劔帶. 一 白布下襟. 一 白色 手套.		
제7조	小禮服은 左開諸具로 홀 事. 一 眞絲高帽. 一 毳制 燕尾服. 一 下衣. 一 袴.		제4조 小禮服은 左開 二種으로 分홀 事. 一 毳制 燕尾服이니 諸具는 左와 如홀 事. 一 眞絲高帽. 一 下衣니 胸部 闊開 制. 一 袴니 上衣 同色地質. 一 鞋니 漆色 皮制 但 禮式院 官員이 宮中에 서 禮式으로 進參홀 時에는 金鈕을 特 用홀 事; 一 毳制 厚錄高套니 諸具는 左와 如홀 事. 一 眞絲高帽. 一 下衣니 胸部 稍狹 制. 一 袴니 上衣 異色地質. 一 鞋니 漆色 皮制. 但 毳制 平帽 及 純色鞋를 着홀 時는 普通服裝으로 認홀 事.
제8조	常服은 左開諸具로 홀 事. 一 毳制 通常帽. 一 毳制 通常衣. 一 下衣. 一 袴.		제5조 平常服의 諸具는 左와 如홀 事. 一 毳 制 平帽. 一 毳制 短後衣. 一 下衣. 一 袴.
제9조	宮內府와 外 各府部院 을 勿論하고 大小官人 이 本規則에 服從홀 事.		.
제10조	武官과 警官이라도 文 官으로 轉任홀 時 는 本 規則에 服從홀 事. 但 武官은 隨宜해야 武 官服裝도 着用홀을 得 홀 事.	1904(광무8).3.30 개정: “着用홀을 得홀 事” → “着用홀을 得홀며 現任에 如何를 勿論하고 禮裝은 小禮服으로며 常裝은 常 服으로 通用홀 事”	제10조 武官과 警官이라도 文官으로 轉任홀 時 는 本 規則에 服從홀 事. 但 武官은 隨宜해야 武官服裝도 着用홀을 得홀 며 現任에 如何를 勿論하고 禮裝은 小 禮服으로며 常裝은 常服으로 通用홀 事.
제11조	判任官이 上第三條 境 遇를 當해야 不得已홀 時는 小禮服으로 大禮 服을 代해야 着用홀을 得홀 事.	.	제11조 左同 (‘上第三條:’上第六條’의 誤記) ³⁶⁾
.	.	1905(광무9).1.16 添入	제12조 喪章은 大禮服·燕尾服·厚錄高套를 照前着用호되 其 表章호는 儀式은 左開와 如홀 事. 一 大禮服은 左臂上 에 黑絹 一寸五分을 裹홀 事. 一 劔柄 에 黑絹 長五寸 廣一寸을 纏홀 事. 一 燕尾服과 厚錄高套는 左臂上에 黑絹 一寸五分을 裹홀 事. 一 眞絲高帽에 黑絹 一寸을 裹홀 事. 此 儀式은 國恤 成服日로 始해야 除服日시지(까지) 用

			<p>하며 若 惑 宮內에서 私服을 遭하사 喪章을 用하시는 境遇에는 公除前陞 見時새고 着用할 事.</p>
<p>제12조37)</p>	<p>附則: 本 規則은 駐劄 外國公使館 官員부터 施行할 事.</p>	<p>(1) 1904.3.30: “本 規則은” → “本 規則은 武官과”³⁸⁾ (2) 1904.10.8: “本 規則은 武官과” → “本 規則은 外交官及武官과”³⁹⁾ (3) 1904.10.14: “施行할 事” → “施行하고 外部及禮式院 · 漢城府 官員은 同年十月三十一日 以內로 實施하되 他官職으로 轉任하거나 遞任되는 境遇라도 仍舊着用할 事”⁴⁰⁾ (4) 1904.10.19: “外部及禮式院 · 漢城府 官員은 同年十月三十一日 以內로 實施하되” → “外部及漢城府 官員은 同年十月三十一日 以內로, 禮式院官員은 同年十一月三十日 以內로 實施하되”⁴¹⁾ (5) 1905.1.16: ① 제12조 添入하면서 이 조항을 제13조로 개정. ② “禮式院官員은 同年十一月三十日 以內로 實施하되 他官職으로 轉任하거나 遞任되는 境遇라도 仍舊着用할 事” → 禮式院官員은 光武九年四月三十日 以內로 實施하되 他官職으로 轉任하거나 遞任되는 境遇라도 仍舊着用하며 該服裝費는</p>	<p>제13조</p> <p>附則: 現今間 大禮服 未備한 官員은 小禮服(厚錄高套)으로 代着할 事.</p>

36) 1900년과 마찬가지로 “判任官이 上第三條 境遇를 當해야 不得已한 時는 小禮服으로 大禮服을 代해야 着用함을 得할 事”라 하였는데, 이는 오류로 “上第三條”를 “上第六條”라 함이 마땅하다. 조항중의 “上第三條”라 함은 대례복의 착용상황을 규정한 조항을 이른다. 위 『관보』의 ‘문관복장규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령이 반포된 1900년 4월 17일에는 이 조항이 第三條에 있었으나 후의 개정 과정에서 第六條로 바뀐다. 그러나 『법규유편』 ‘문관복장규칙’ 제11조에서 이 부분

		<p>現今問은 度支部에서 支給 糶 事⁴²⁾</p> <p>(6) 1905.5.17: “禮式院官員은” → “禮式院 中 禮式卿 以下 所屬 官員과 農商工部 中 鐵道局 官員은⁴³⁾</p> <p>(7) 1905.10.24: “本 規則은 外交 官及武官과 駐劄外國公使館 官員부터 施行하고 外部及 漢城府 官員은 光武八年十 月三十一日 以內로, 禮式院 中 禮式卿 以下 所屬 官員과 農商工部 中 鐵道局 官員은 光武九年四月三十日 以內로 實施호되 他官職으로 轉任 호거나 遞任되는 境遇라도 仍舊着用호며 該服裝費는 現今問은 度支部에서 支給 糶 事.” → “本 規則은 光武九年 十 日月一日부터 便宜 從호 야 漸次 施行호 事.”⁴⁴⁾</p> <p>(8) 1907(광무11)6.22: 右의 내 용으로 개정.</p>	
--	--	---	--

- * 최초 『관보』에 반포(1900.4)된 내용과, 후에 개정된 사항이 반영된 『법규유편』(1908) 내용을 비교·정리하였다.
- * ‘개정상황’은 위 兩者 사이의 기간 중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였고, 출처는 『법규유편』이다. 『법규유편』은 각 조항을 기재하기에 앞서 법령 반포 이후의 개정상황을 기록하였는데 ‘문관복장규칙’ 역시 그러한 체제를 따른다.
- * 이해를 돕기 위해 『관보』는 조항 순서로 정리하고, 『법규유편』은 『관보』의 내용에 맞게 조항을 배치하였다.

이 수정되지 않고 당초의 규정대로 “上第三條”라 하였다.

- 37) 제12조 ‘附則’은 1900~1908년 사이에 총8차례 개정된다. 개정상황이 복잡하므로 아래에서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었을 때의 조항 全文을 ‘개정된 조항 全文’이라 하여 정리한다.
- 38) 개정된 조항 全文: “附則: 本 規則은 武官과 駐劄外國公使館 官員부터 施行호 事.”
- 39) 개정된 조항 全文: “附則: 本 規則은 外交官及武官과 駐劄外國公使館 官員부터 施行호 事.”
- 40) 개정된 조항 全文: “附則: 本 規則은 外交官及武官과 駐劄外國公使館 官員부터 施行하고 外部及禮式院·漢城府 官員은 同年十月三十一日 以內로 實施호되 他官職으로 轉任호거나 遞任되는 境遇라도 仍舊着用호 事.”
- 41) 개정된 조항 全文: “附則: 本 規則은 外交官及武官과 駐劄外國公使館 官員부터 施行하고 外部及漢城府 官員은 同年十月三十一日 以內로, 禮式院官員은 同年十一月三十日 以內로 實施호되 他官職으로 轉任호거나 遞任되는 境遇라도 仍舊着用호 事.”

나. 大禮服 製式

대례복을 구성하는 각 복식의 세부형태는 ‘文官大禮服製式’⁴⁵⁾에 규정되고, 별도로 ‘文官大禮服圖式’(그림 1)이 반포된다. 그러나 반포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다. 즉 ‘제식’을 1900년 4월 1일 관보에 반포하면서 제13조에 “以上 各種은 圖本을 별도로 갖춘다”고 하였으나, 이에 부수되었어야 할 ‘도식’은 1901년 9월 3일에 가서야 반포된다. ‘도식’은 장서각에 소장된 『관복장도안』 중 No 4372·4와 각 면의 구성 및 복식의 세부형태가 같다.⁴⁶⁾ 대례복을 구성하는 상의·下衣(胴衣)·袴·帽·劍의 세부형태(<그림 7> 참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文官大禮服圖式
1900년(광무4) 칙령15호(1901.9.3 『관보』 반포)



(가) 上衣

옷감과 색은 칙임관과 주임관 모두 深黑紺色の 羅紗⁴⁷⁾를 쓴다. 깃의 형태는 豎

- 42) 개정된 조항 全文: “附則: 本 規則은 外交官及武官과 駐劄外國公使館 官員부터 施行하고 外部及 漢城府 官員은 光武八年十月三十一日 以內로, 禮式院官員은 光武九年四月三十日 以內로 實施하고 他官職으로 轉任하거나 遞任되는 境遇라도 仍舊着用하며 該服裝費는 現今問은 度支部에서 支給할 事.” “光武八年十月三十一日 以內로”는 세 번째 개정이 있었던 1904(광무 8).10.14에 첨입된 것이다. 당시에는 “光武八年”이 아닌 “同年”으로 첨입되었고 이후의 개정사항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1905(광무 9).10.24의 여섯 번째 개정에서 이 부분이 “光武八年十月三十一日 以內로”라 하여 당시 “同年”이 이미 “光武八年”으로 바뀌어 있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부분을 “同年”이 아닌 “光武-以內로”라 하였다.
- 43) 개정된 조항 全文: “附則: 本 規則은 外交官及武官과 駐劄外國公使館 官員부터 施行하고 外部及 漢城府 官員은 光武八年十月三十一日 以內로, 禮式院 中 禮式卿 以下 所屬 官員과 農商工部 中 鐵道局 官員은 光武九年四月三十日 以內로 實施하고 他官職으로 轉任하거나 遞任되는 境遇라도 仍舊着用하며 該服裝費는 現今問은 度支部에서 支給할 事.”
- 44) 개정된 조항 全文: “附則: 本 規則은 光武九年 十月一日부터 便宜 從히야 漸次 施行할 事.”
- 45) 『舊韓國官報』8, 앞의 책, 392~394쪽.
- 46) 최규순·김은정, 앞의 논문, 57~69쪽
- 47) ‘羅紗’는 양털로 짠 두터운 천을 가리키는 포르투갈어 ‘RAXA’에서 온 용어로, 후에는 ‘○○라사’라 하여 맞춤양복점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기도 하였다.

襟이다. 軟靑色 라사로 만들고 橫紋의 金線 두 가닥을 붙인다. 그 안에 칩입관은 무궁화 2개, 주입관은 무궁화 줄기만을 金絲로 繡[金繡] 놓는다.⁴⁸⁾ 앞길의 모양은 가슴에서 합해졌다가 아랫배에 이르러 橫으로 잘라지며, 양 옆에서 비스듬히 내려가 뒷자락에 이어진다. 가장자리[邊線]에 황문의 금선을 두르는데 칩입관은 5푼[分], 주입관은 4푼 너비로 한다. 앞길에는 무궁화 무늬[表章]를 금수한다. 칩입관은 앞길 좌우 길이 만나는 지점에 1~4등까지 모두 반쪽짜리 무궁화[半槿花] 6개를 놓고, 양쪽의 가슴 위아래에는 온전한 무궁화[全槿花]를 칩입1등 6개·2등 4개·3등 2개를 놓으며, 4등은 무늬가 없다. 주입관은 1등~6등까지 모두 같은 형태로, 가슴 위아래에는 무늬를 놓지 않고 앞길 좌우 길이 만나는 지점에만 반쪽 무궁화 4개가 있다. 단추는 왼쪽 앞길에 깃 아래에서 허리까지 총9개가 있다.

뒷길은 허리 아래를 가른 후 갈라진 양쪽 가장자리에는 황문의 금선을 두르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 양 옆에는 지름 7푼의 금단추 1개씩을 단다. 허리와 등(깃 아래)에 칩입관은 온전한 무궁화 1개 씩, 주입관은 무궁화 줄기만을 금수한다. 또 두 개의 주머니에 칩입관은 온전한 무궁화 각 1개가 있고, 주입관은 줄기만 있다.⁴⁹⁾

소매는 칩·주입관이 모두 같다. 軟靑色 라사로 만든다. 袖口에서 3치[寸] 되는 지점의 뒷부분에서 봉합하고 황문금선을 두르며, 그 안에는 좌우에 각각 하나씩 무궁화를 금수한다.

(나) 下衣[胴衣]

칩·주입관이 모두 같다. 심흑감색 라사로 만든다. 단추는 金으로 하며, 5푼 너비이다. 단추와 단추 사이는 2치이다.

(다) 바지[袴]

심흑감색 라사로 만든다. 좌우 양쪽에 凹凸 무늬가 있는 1치 너비의 금선을 붙이는데, 칩입관은 두 가닥이고(총2치), 주입관은 한 가닥이다.

48) ‘製式’에서는 칩·주입관이 모두 무궁화 2개를 표현한다 하였으나, ‘圖式’에는 칩입관만 무궁화가 표현되었고 주입관은 없다.

49) ‘문관대례복제식’에는 “칩·주입관을 막론하고 허리 아래 금선을 두른 내부에 온전한 무궁화 2개를 수놓고, 칩입관은 등에 온전한 무궁화 1개를 더 수놓는다” 하였다. 그러나 ‘도식’에는 허리와 등에 칩입관은 온전한 무궁화 1개씩, 주입관은 무궁화 줄기만을 그려 넣었다. 또 주머니의 무늬는 ‘제식’에서 언급이 없으나 ‘도식’에는 표현되어 있다. 옷의 형태를 ‘제식’에서 글로 표현할 때 잘못 기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도식’이 ‘제식’보다 나중에 반포되었으므로 본문에서는 후에 반포된 것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라) 帽

黑毛天鵝絨으로 만든다. 山 모양인데 길이는 1자5치, 높이는 4치5푼이나 착용자의 머리형태를 보아 약간의 변화를 준다. 꼭대기에는 餘毛를 다는데 칩임관은 백색이고, 주임관은 흑색이다. 側章은 무궁화 하나를 붙이는데 칩임관은 正面을 향해 활짝 핀 모양이고, 주임관은 한 쪽이 접힌 모양이다. 측장의 한쪽 끝(幹邊)에는 지름이 7푼인 금단추를 붙인다. 그 가장자리에는 3푼 너비의 금선을 붙이는데 칩임관은 凹凸 무늬이고, 주임관은 무늬가 없다.

(마) 劍

길이는 2자[尺]6치5푼이다. 손잡이[柄]의 길이는 4치5푼인데 칩임관은 白皮, 주임관은 黑皮에 金線을 소라 모양으로 감는다. 鯉口는 2치6푼, 鑑이 5치이다. 손잡이 머리는 弓形이며, 環鑰鞞鞞(칼집 끝부분) 위에는 칩임관은 무궁화를 조각함에 비해 주임관은 무늬가 없다. 劍緒는 칩임관은 純金絲로 하고, 주임관은 부분에 따라 금사나 은사[金銀綵]를 쓴다. 劍帶는 칩임관은 金織이고, 주임관은 銀織이다.

다. 大禮服 遺物

閔哲勳(1856~1925년)⁵⁰⁾이 1901년 파리에서 제작하여⁵¹⁾ 입었던 칩임1등 복식一襲(<그림 3>)이 韓國刺繡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이 유물은 위에 정리된 제식 및 도식에 잘 부합하므로 상세한 서술은 생략한다.⁵²⁾

(2) 1906年(광무 10)의 宮內府 大禮服

1900년의 문관복은 1906년 12월 12일에 칩령 제75호 ‘文官大禮服 製式 改正件’⁵³⁾

50) 閔哲勳은 1884년(고종 21) 文科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899년(광무 3)에 辦理公使로 궁내부 特進官에 임명되었고, 1900년에는 駐劄英(영국)·德(독일)·義(이태리) 삼국의 特命全權公使에 발탁되었으며, 이듬해(1901년)에는 澳國公使를 겸임하였다. 그 후 1904년(광무 8)에는 駐美全權公使로 轉補 되었다가 그 이듬해(1905년)에 다시 獨逸特命全權大使로 부임하였다. 1906년에는 궁내부 특진관의 內職으로 보임되기도 하였지만, 1909년(隆熙 3)에 다시 駐劄獨逸全權大使로 임명되는 등 주로 외교활동의 직책을 맡았다. 柳喜卿(외), 앞의 책, 15~16쪽.

51) 유물의 상의 뒷고대 안쪽에 “Mim chul whin; Jules Maria; 14.R.여.4 septembre paris”, 바지 호 주머니 안쪽에 “Jules Maria; 1901. 6. 10”이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柳喜卿(외), 위의 책, 15쪽.

52) 이 유물에 대한 상세한 형태는 『大韓帝國時代 文武官服飾制度(大韓帝國時代 文物展 카다로그 附錄)』, 柳喜卿(외), 위의 책, 8~14, 27, 15~22쪽을 참고할 수 있다.

에서 개정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깃의 형태가 立襟[stand collar]으로 바뀌고, 앞길의 무늬가 모두 생략되는 것이다 (<그림 2>右). 한편 이보다 먼저 2월 27일에 ‘宮內府本府及禮式院禮服規則’과 ‘宮內府本府及禮式院大禮服과小禮服製式’이 반포되면서 일반 문관복과 궁내부 관복이 명확히 구별된다.

<그림 2> 1900년대 서양식 일반 문관 大禮服의 변화에 대한 기준 견해(3단계)



이렇게 1906년에 일반 문관복과 궁내부 관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규정을 하나의 틀에서 이해하였다. 즉 일반 문관 대례복의 변화를 3단계<그림 2>로 이해하여 1900년의 규정이 1906년 2월에 개정되었다가, 같은 해 12월에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고 보았다.⁵⁴⁾ 그러나 이는 1906년 2월의 규정이 일반 문관이 아닌 궁내부 관원의 복제임을 간과한 것이다.

가. 宮內府 本府 및 禮式院 禮服 規則

1906년 2월에 제정된 ‘궁내부본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은 예복의 종류, 착용상황, 구성요소에 대해 규정하였다. 예복의 종류는 대례복과 소례복이 있다. 대례복은 問安, 動駕, 動輿, 공식 석상에서 폐하를 알현할 때, 궁중 연회가 있을 때 등에 입고, 소례복은 궁내에서 폐하를 알현할 때나 공식 연회 등에 입는다. 대례복의 구성은 大禮帽·大禮衣·下衣[胴衣]·大禮袴·劍·劍帶·白布下襟·白色 장갑[手套] 등이고, 소례복은 대례모·小禮衣·하의·袴·大禮劍·검대·백포하금·백색 장갑 등으로 구성된다. 착용신분은 ‘규칙’에서 언급이 없으나 ‘제식’에서 친·척·주임관이 언급되고 있어 이들이 대례복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이전에 없던 친임관이 추가되었다.

53) 『舊韓國官報』 16, 앞의 책, 1176~1184쪽.

54) 李美娜, 앞의 논문, 189쪽; 柳喜卿(외), 앞의 책, 8~14, 27쪽.

나. 大禮服 製式

1906년 궁내부 대례복의 형태는 ‘궁내부분부 및 예식원 대례복과 소례복 제식’⁵⁵⁾에서 규정되었고, 대례복과 소례복의 세부형태를 친·척·주임관의 신분별로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때의 제도는 처음 『관보』에 반포된 내용과 1908년에 간행된 『법규유편』의 내용이 같고, 1910년 간행된 『궁내부규례』에서 당시 현행되던 친·척·주임관의 복장으로 1906년 2월에 제정된 위 복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1906년의 복제가 細則의 변화 없이 1910년 6월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식’ 마지막 조항인 제16조에서는 별도로 그림[圖本]을 갖추어 반포한다 하였는데⁵⁶⁾ 『관보』와 『법규유편』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現傳하는 유물과 사진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대례복을 구성하는 上衣·下衣[胴衣]·袴·帽·劍의 세부형태는 다음과 같다.⁵⁷⁾

(가) 上衣

친·척·주임관 모두 심흑감색의 라사를 쓴다. 형태는 앞깃이 가슴에서 합해졌다가 허리부분에서 점점 갈라져 비스듬하게 흘러내려 자락에 이르고, 가장자리에는 황문의 금선을 두르는데 친·척임관은 5푼, 주임관은 4푼 너비이다. 앞길의 깃에서 자락 사이에는 옆으로 누운 이화 모양(橫李花貌樣)을 친임관 11개, 척임관 9개, 주임관 7개를 금수한다. 황이화모양은 이화 활짝 핀 것[全開李花] 1개, 반만 핀 것[半開李花] 1개, 피지 않은 봉우리 형태의 이화[未開李花] 3개로 이루어진 이화 줄기가 옆으로 누운 모양을 말한다. 양 옆 허리에는 天靑色으로 된 주머니를 하나씩 달고, 여기에는 활짝 핀 이화 3개를 수놓는다. 왼쪽 앞길에는 금으로 만든 이화 단추[鈕釦] 7개를 단다.⁵⁸⁾

55) 『舊韓國官報』 16, 앞의 책, 194~195쪽.

56) “第十六條 以上 各種은 圖本을 另具 頒佈할 事.” 『舊韓國官報』 16, 위의 책, 195쪽.

57) ‘규칙’에서는 대·소례복의 구성요소에 모두 ‘백포하금’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 소례복에 대례모와 대례검이 있는데 이들은 대례복의 것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인지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제식’에 규정된 것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8) 원문에는 “前面左右에 金製李花鈕釦 七介式으로 扠며”라 하였으나 유물을 보면 왼쪽 길에 단추가 있다.

뒷길은 허리 아래를 가르고, 그 가른 양쪽 끝에 횡문의 금선을 두르며, 뒷자락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의 양쪽에는 금으로 만든 7푼 너비의 이화단추 1개씩을 단다. 또 친·척·주임관을 막론하고 활짝 핀 이화 3줄기를 금수하는데, 등[背]에는 아래를 향한(거꾸로 된) ‘品’字 모양으로, 허리에는 위를 향한 ‘品’字 모양으로 한다. 소매는 친·척·주임관이 모두 같다. 천청색 라사로 만든다. 수구에서 3치 되는 지점의 뒷부분에서 봉합하고, 그 안에는 좌우에 각각 활짝 핀 이화 3줄기를 ‘品’字 모양으로 금수한다. 깃도 친·척·주임관이 모두 같고, 천청색 라사로 만든다. 횡문의 금선 두 가닥을 붙이고, 그 안에 활짝 핀 이화 하나를 금수하는데 좌우에 줄기가 있다.

(나) 下衣[胴衣]

친·척·주임관이 모두 같다. 라사로 만드는데 白色과 심흑감색 두 종류로 한다. 단추는 금으로 만들고, 5푼 너비이다. 단추와 단추 사이는 2치이다.

(다) 바지[袴]

심흑감색 라사로 만든다. 좌우 양쪽에凹凸 무늬로 된 1치 너비의 금선을 붙이는데 친·척임관은 두 가닥이고(총2치), 주임관은 한 가닥이다.

(라) 帽

흑모천이용으로 만든다. 山 모양인데 길이는 1자5치, 높이는 4치5푼이나 착용자의 머리형태를 보아 약간의 변화를 준다. 꼭대기에는 식모를 다는데 친·척임관은 백색이고, 주임관은 흑색이다. 측장은 활짝 핀 이화 한 줄기를 정면을 향하도록 비스듬히 붙이고, 한쪽 끝에는 금으로 만든 지름 7푼5리의 단추를 붙인다. 그 가장자리에는 금선을 수놓는데 그 사이는 1치5푼으로 한다. 양쪽 옆에는 친·척·주임관 모두 靑·紅의 太極章이 드러나도록 한다.

(마) 劍

劍의 길이는 2자6치5푼이다. 손잡이의 길이는 4치5푼이며, 친·척임관은 純金線을 감고, 주임관은 純銀線을 감는다. 鯉口는 2치6푼, 鑑이 5치이다. 손잡이 머리는 궁형이며, 칼집 끝부분 위에는 반만 핀 이화 1개 및 이화 잎 2개를 조각한다. 친·척임관은 劍鞘 위아래에 草龍을 조각하는데, 주임관은 초룡이 없다. 검서는 친·척임관은 純金絲로 하고, 주임관은 純銀絲로 한다. 검대는 친·척임관은 金織이고, 주임관은 銀織이다.

다. 大禮服 遺物

광무연간에 궁내부 외교문서 및 항실 비서업무를 담당했던 朴基駿의 것으로 전해지는⁵⁹⁾ 주임관 대례복 일습(<그림 4>)이 한국자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유물은 코트형태로 옷의 형태와 무늬 등이 제도와 잘 맞는데, 다만 下衣[胴衣]에 金絲匾職으로 邊線이 둘러져 있는 점이 다르다.⁶⁰⁾ 또 제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왼쪽 주머니에 칼을 꽂을 수 있도록 갈라놓은 부분이 있다.

이 밖에 몇몇 사진자료에서 궁내부 친·척·주임관의 대례복 착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순종이 1909년 1월에 서북 지방을 돌아볼 때 찍은 기념 사진인데 오른쪽에서 첫 번째 인물은 무늬가 9줄인 칩임관 대례복을, 일곱 번째 인물은 무늬가 11줄인 친임관 대례복을 입고 있다. 또 <그림 6>의 인물은 무늬의 간격으로 보아 이화무늬가 7줄인 주임관 대례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옷의 형태 및 무늬는 제도·유물과 같은데 다만 下衣[胴衣]에 유물과 마찬가지로 변선이 둘러져 있는 점이 제도와 다르고, 소매 바탕이 금색인 점이 제도·유물과 다를 뿐이다.

(3) 1911年 李王職 官服

궁내부는 1911년 2월 李王職 설치와 함께 폐쇄된다. 일제는 이왕직을 설치한 후 바로 복제도 규정하는데 1911년 4월 8일에 이왕직 직원이 다시 일반 문관 대례복을 입도록 규정한다.⁶¹⁾ 일반 문관의 대례복은 <그림 2>에 있는 1906년 12월의 제도를 적용한 것이다. <표 3>은 위에서 살펴 본 1900년과 1906년의 궁내부 대례복의 세부형태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 1900년과 1906년 제정 宮內府 大禮服 형태 비교



종류	세부사항	1900년 4월 제정 大禮服 (일반 문관 大禮服과 同)	1906년 2월 제정 大禮服
上衣	색 및 재료	深黑紺色 羅紗	深黑紺色 羅紗
	깃 재료	軟青色 羅紗	天青色 羅紗

59) 柳喜卿(외), 앞의 책, 23쪽.

60) 柳喜卿(외), 앞의 책, 23~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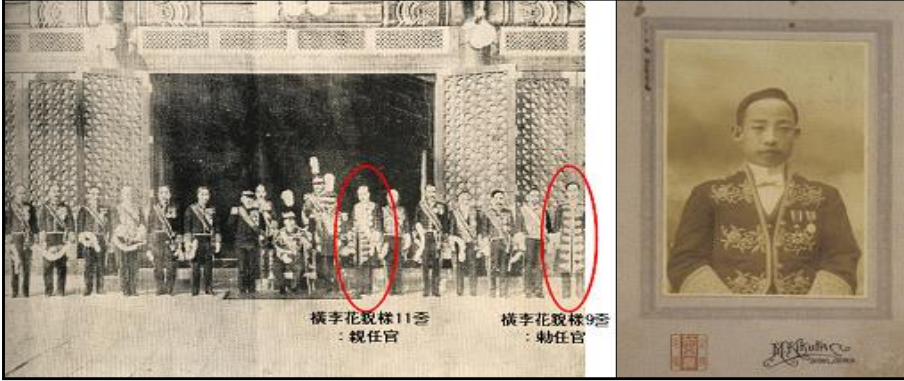
61) 『純宗實錄附錄』4年(1911) 4月 8日: “本職職員服章 定以著用一般文官大禮服 因宮內省通牒也.”

	형태	豎襟	.
	金線	橫紋 金線 2條	橫紋 金線 2條
	무늬	權花. 金繡. 勅任: 權花2. 奏任: 줄기	李花. 金繡. 親·勅·奏任 막론하고 全開李花1과 줄기
앞길	형태	앞깃이 가슴에서 합해졌다가 아랫배에 이르러 橫으로 잘라지며, 양 옆에서 비스듬히 내려와 뒷자락을 이룸	앞깃이 가슴에서 합해졌다가 허리부분에서 점점 갈라져 비스듬하게 흘러내려 자락에 이룸
	金線	邊線에 橫紋 金線 두름. 너비: 勅任 5分, 奏任 4分	邊線에 橫紋 金線 두름. 너비: 親·勅任 5分, 奏任 4分
	무늬	權花. 金繡. 위치: 앞길 全面 勅任1等: 半權花6, 全權花6. 勅任2等: 半權花6, 全權花4 勅任3等: 半權花6, 全權花2. 勅任4等: 半權花6 奏任1~6等: 半權花4	李花: 橫李花貌樣 줄기. 全開李花 1, 半開李花 1, 피지 않은 봉우리 형태의 이화 3으로 구성 金繡. 위치: 깃에서 자락 사이 親任: 11줄, 勅任: 9줄, 奏任: 7줄
	단추	왼쪽 앞길에 총9개	왼쪽 앞길에 金製 李花 단추[鈕釦] 총7개
	형태	허리 아래를 가름	허리 아래를 가름
뒷길	金線	허리 아래 갈라진 양쪽 가장자리에 橫紋 金線 두름	허리 아래 갈라진 양쪽 가장자리에 橫紋 金線 두름
	무늬	權花. 金繡. 위치: 허리, 등(背: 깃아래) 勅任: 全權花 각1. 奏任: 權花 줄기	李花. 金繡. 위치: 허리, 등 親·勅·奏任을 막론하고 全開李花 3 줄기를 등에는 아래를 향한(거꾸로 된) '品'字 모양으로, 허리에는 위를 향한 '品'字 모양으로 함
	단추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 양 옆에 7푼 지름의 金製 단추를 1개씩 댐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 양 옆에 7푼 지름의 金製 李花 단추를 1개씩 댐
	주머니	양 옆 각1개. 權花를 金繡 勅任: 全權花 각 1. 奏任: 權花 줄기	天青色. 全開李花 3개를 刺繡
소매	재료	軟青色 羅紗	天青色 羅紗
	형태	袖口에서 3寸 되는 지점의 뒷부분에서 봉합	袖口에서 3寸 되는 지점의 뒷부분에서 봉합
	金線	橫紋 金線 두름	.
	무늬	權花를 金繡. 全權花 한 쪽에 각2(양쪽 소매 총4)	全開李花를 金繡. 李花 3줄기로 '品'字 모양 이뤄 한 쪽에 각2(양쪽 소매 총4)
下衣	재료	深黑紺色 羅紗	2종류 : 白色 羅紗, 深黑紺色 羅紗
	단추	5푼 너비. 金製. 단추와 단추 사이 간격: 2치	5푼 너비. 金製. 단추와 단추 사이 간격: 2치
袴	재료	深黑紺色 羅紗	深黑紺色 羅紗
	金線	凹凸紋. 너비: 1寸 勅任: 2條(총2寸), 奏任: 1條	凹凸紋. 너비: 1寸. 親·勅任: 2條(총2寸), 奏任: 1條

帽	재료	黑毛天鵝絨	黑毛天鵝絨	
	형태	山 모양. 길이 1자5치, 높이 4치5푼. 단 착용자의 머리형태에 따라 조정 가능	山 모양. 길이 1자5치, 높이 4치5푼. 단 착용자의 머리형태에 따라 조정 가능	
	飾毛	勅任: 白色, 奏任: 黑色	親·勅任: 白色, 奏任: 黑色	
	側章	槿花. 勅任: 활짝 핀 모양, 奏任: 한쪽이 접힌 모양 幹邊에 지름 7分の 金製 단추 붙임 가장자리에 3푼 너비의 金線 붙이는데 척임관은 凹凸紋, 주임관은 무늬 없음	全開梨花 幹邊에 지름 7分5里的 金製 단추 붙임 가장자리에 金線을 놓는데 그 사이는 1寸5分으로 함 側章 옆으로 靑·紅 太極章이 드러나 도록 함	
劍	총장	2尺6寸5分	2尺6寸5分	
	柄	길이: 4寸5分 勅任 白皮, 奏任 黑皮에 金線을 나선 모 양으로 감음	길이: 4寸5分 親·勅任은 純金線을 감고 劍鞘 위아 래에 草龍을 조각하고, 奏任은 純銀線 을 감고 草龍은 없음	
	鯉口	2寸6分	2寸6分	
	鎧	5寸	5寸	
	손잡이	머리형태: 弓形	머리형태: 弓形	
	環鎧鞞 鞞의 무늬	勅任: 槿花. 奏任: 무늬 없음	半開梨花 1개 및 이화 잎 2개 조각	
	劍緒 劍帶	勅任: 純金絲, 奏任: 純銀絲 勅任: 金織, 奏任: 銀織	親·勅任: 純金絲, 奏任: 純銀絲 親·勅任: 金織, 奏任: 銀織	
유물	<p><그림 3> 勅任官 大禮服 閔哲勳 大使 유품(1901년 제작)</p> 		<p><그림 4> 奏任官 大禮服(橫梨花貌樣7줄) 朴基駿 유품</p> 	
	<p>韓國刺繡博物館 소장; 劉頌玉, 『韓國服飾史』(1998), 347쪽; 경기도박물관, 『실로 갖는 꿈』(2004), 44~45쪽.</p>			

<그림 5> 大禮服 입은 宮內府 親勅任官
1909년 1월 西北巡行 前 純宗과 大臣들(仁政殿).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3-004416-218)

<그림 6> 大禮服 입은 宮內府
奏任官. 한미사진미술관,
『한국근대사진소장품
선집』(2006)



* 궁내부대례복을 입었을 때 어깨에 있는 橫李花貌樣 1줄은 전면에서 잘 드러나지 않음.

IV. 宮內府 大禮服과 藏書閣 所藏 『官服章圖案』과의 관계

근대에 서양식 관복을 제정할 때는 제도를 ‘規則’ ‘製式’ ‘圖式’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이 시기 서양식 관복의 제도와 형태에 대해서는 先學들의 연구를 통해 많은 점이 밝혀졌으나 당시 『관보』를 통해 반포되기도 했던 ‘도식’의 원본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서양식 관복을 제정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참고했는가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 없이 막연히 영국제도를 모방한 일본제도를 채용했다 하였다.

장서각에 소장된 李王室古文書에는 『官服章圖案』 No4372~4375의 총4종류의 자료가 있는데,⁶²⁾ 이들 자료는 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No4372와 4374(총 12면. <그림 7>左)는 구성과 내용이 완전히 같은데 1900년에 제정된 문관 대례복(주요무늬: 무궁화)이 그려져 있어 이 때 제정된 대례복의 원본(No4372) 및 복사본(No4374)임을 알 수 있다. 또 No4373의 복식 형태를 임의로

62) 『官服章圖案』 명칭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에서 펴낸 『藏書閣李王室古文書目錄』을 근거로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 『藏書閣李王室古文書目錄(附 拓本, 書畫, 圖錄 목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분류하면 총 7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자료는 1900년의 문무관 대례복을 제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 일본에서 들여왔거나, 혹은 제도를 제정한 다음 옷을 만들기 위해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No4375(<그림 7>右)는 No4372·4와 구성이 같다. 다만 복식에 사용된 주요무늬가 무궁화가 아닌 이화인 점이 다르다.⁶³⁾

『관복장도안』 중 No4373과 No4375는 궁내부 대례복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인 No4375는 1900~1906년의 대례복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No4373의 일부 복식은 1906년 2월에 제정된 대례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1900~1906년의 大禮服과 No4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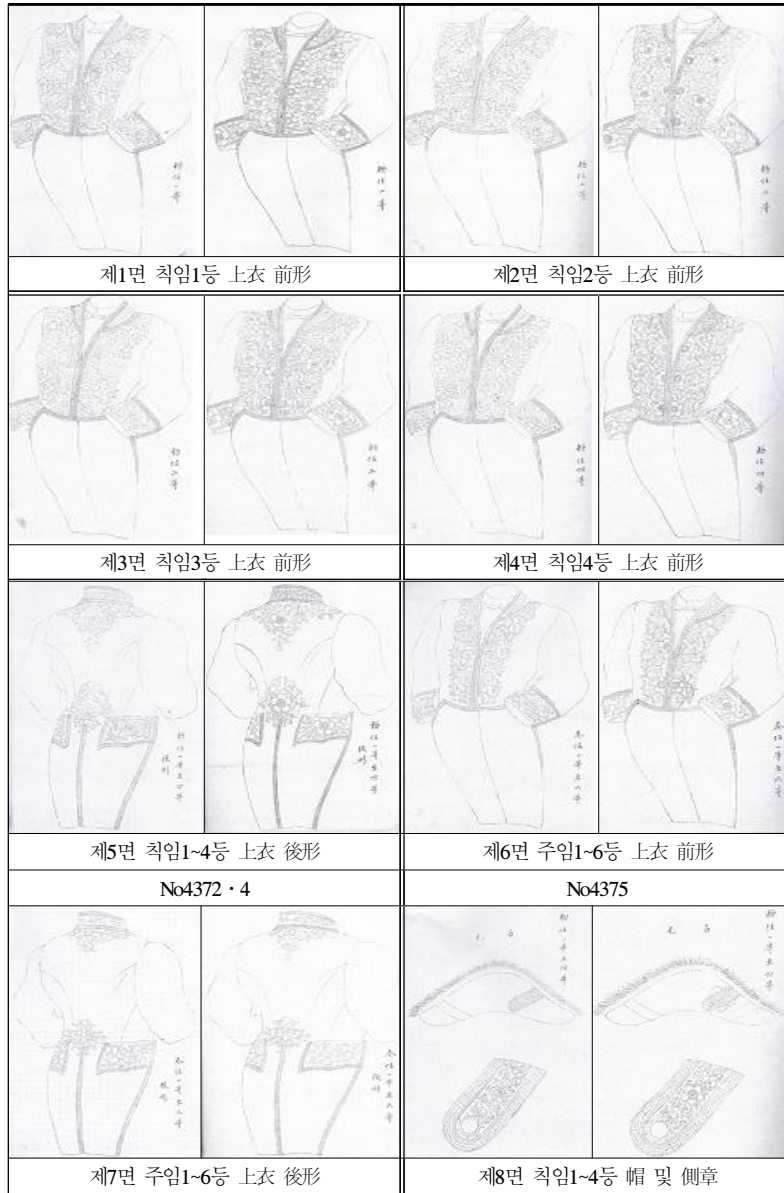
『관복장도안』 No4375는 총12면으로 되어 있고, 上衣 帽 劍 下衣[胴衣] 袴 등이 그려져 있다. 제1~7면까지에는 上衣가 있는데 제1~4면에는 각각 칩입1~4등의 상의 앞모습, 제5면에는 칩입관 상의 뒷모습, 제6면에는 주임관 상의 앞모습, 제7면에는 주임관 상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어 제8면에는 칩입관의 모자가 있고, 그 아래에 側章이 확대되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제9면에는 주임관의 모자와 측장이 있다. 제10·11면에는 각각 칩·주임관의 검 및 검서가 있다. 제12면에는 하의 [동의], 袴, 袴에 붙이는 금선 등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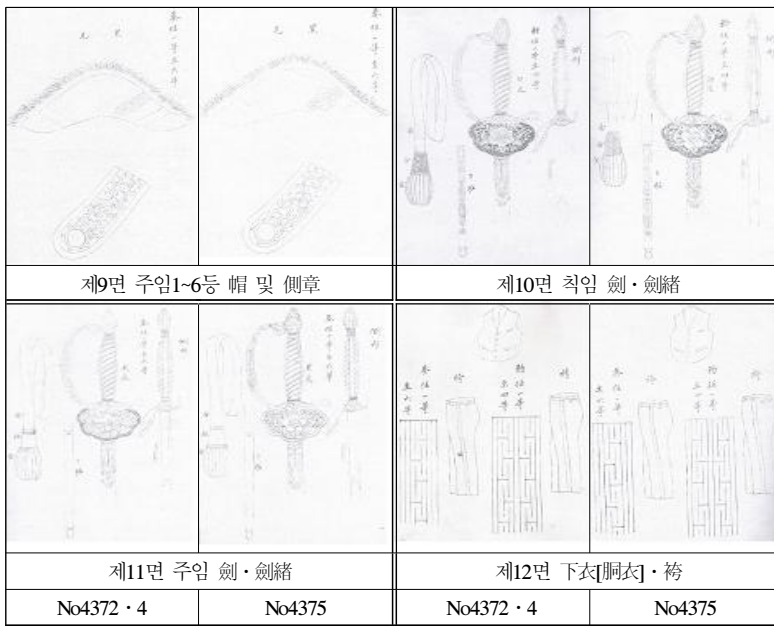
위와 같은 구성은 1900년의 ‘문관대례복체식’에 부수된 ‘도식’인 No4372·4와 주요무늬가 무궁화와 이화라는 점만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 먼저, 전체 구성 면에서 볼 때 1~12면에 각각 그려진 복식이 같다. 다음, 세부적으로 볼 때 아래의 공통점이 있다. 상의의 모양이 같고, 길의 테두리에 모두 橫紋의 선을 둘렀다. 앞길에 짝 차도록 꽃줄기를 표현한 후 그 사이에 꽃을 놓았는데 그 수와 배열 방식이 같다. 소매와 깃의 무늬 역시 동일하다. 모자의 형태와 칩·주임관의 구별, 측장 등의 표현방식이 같다. 검 역시 무늬의 위치, 손잡이 장식, 검서의 재료 등

63) 『官服章圖案』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는 「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 의생활 연구의 현황과 전망」(최규순·김은정, 앞의 논문, 57~69쪽)을 참조할 수 있다. 단 이 논문에서는 개략적인 소개만 하였고, 제11회 장서각콜로키움에서 발표된 「藏書閣 소장 『官服章圖案』의 복식사료적 가치」(최규순,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11.20)에서 좀 더 상세히 정리되었으며, 현재 그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이다.

모든 점이 일치한다. 下衣[胴衣]와 바지도 형태가 같다(<그림 7> 참조).

<그림 7> 『官服章圖案』 No4372·4(1900年 文官大禮服 圖式)와 No4375의 구성 및 복식 형태 비교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 중 No4375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이 자료가 언제의 어떤 제도를 그린 것인지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No4375가 1900년에 제정된 복식의 자료인 『관복장도안』 중의 일부이고, 또 No4372 · 4와의 관련성을 근거로 궁내부 대례복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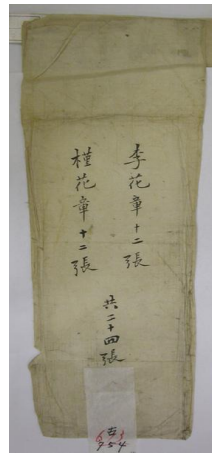
첫째, 자료의 성격에 대한 것으로 No4375는 궁내부 대례복의 도식일 가능성이 있다. 1900년 문관복을 제정할 때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 제9조에서 궁내부 관원의 복식 역시 일반 문관과 같은 제도를 적용받는다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일반 문관복과 궁내부 관복은 무너로서 구별되었고 No4375가 그 대례복 도식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즉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관원의 대례복에는 무궁화를 사용하고, 황실업무를 담당하는 궁내부 관원의 대례복에는 이화를 사용하여 兩者를 구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직급이라 하더라도 일반 관원과 궁내부 관원의 봉급이 달랐던 당시에⁶⁴⁾ 양자의 옷을 같은 것으로 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64) 1895년 3월 25일에 규정된 일반관원의 봉급은 칩입1등 5,000원(총리대신) · 4,000원(各部대신), 2등 3,000원, 3등 1급 2,500원 · 2급 2,200원, 4등 1급 2,000원 · 2급 1,800원, 주임1등 1,600원, 관입1등 500원 등이다. 이에 비해 같은 해 4월 2일 규정된 궁내부관원의 봉급은 칩입1등 3,000원,

또 당시는 아직 길으로 드러나는 복식을 통해 등급을 표시하던 古代의 관념이 남아있던 시기이고, 따라서 사회적 대우가 달랐던 두 종류의 관원들이 같은 옷을 입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1906년의 일반 대례복과 궁내부 대례복은 그 무늬가 무궁화와 이화로 분명히 구분되는데, No4375의 존재는 이러한 구분이 1906년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런 면에서 위 제9조는 일반 대례복과 궁내부 대례복이 무늬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들어간 조항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제정 시기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는 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1900년에 일반 문관복이 제정될 때 궁내부 관복이 함께 제정되었고, No4375가 그 대례복의 도식일 가능성이 있다. No4375는 1900년 제도인 No4372·4와 무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면에서 일치하고, 또 그림 옆에 있는 글씨를 비교해보면 위치·字形 등에 있어서도 두 자료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 『관복장도안』 원본을 조사한 결과 No4374(槿花)와 No4375(李花)가 하나의 한지봉투(<그림 8>) 안에 들어있음이 확인되었다. 봉투의 겉면에는 “李花章十二張 槿花章十二張 共二十四張”이라 적혀있는데 글씨가 쓰인 공간이 균등하여 하나의 자료가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두 자료가 동시에 넣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보면 No4372·4와 No4375가 동시에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광무4년에 문관복장을 제정한 후 나중에 추가로 궁내부 관복을 규정하였고, No4375가 그 대례복의 도식일 가능성이 있다. 1900년의 ‘문관복장규칙’에서 궁내부 대례복이 일반 문관 대례복과 같음을 규정한 제9조는 1905년 1월에 폐지(<표 2>참조)된다.⁶⁵⁾ 이는 궁내부 대례복이 1906년에 별도로

<그림 8> 『관복장도안』 No4374·5를 넣었던 한지봉투(13×34.5cm)



2등 2,000원, 3등 1급 1,000원·2급 800원, 4등 660원이다. 또 같은 해 11월 10일에 개정된 바에 의하면 칙임1등 4,000원, 2등 2,400원, 3등 1급 1,800원·2급 600원, 4등 1급 1,500원·2급 550원이다. 『法規類編(元)』 第2卷 規制門 第3類 「官等俸給」(內閣記錄局, 앞의 책, 239~244쪽); 오연숙, 앞의 논문, 3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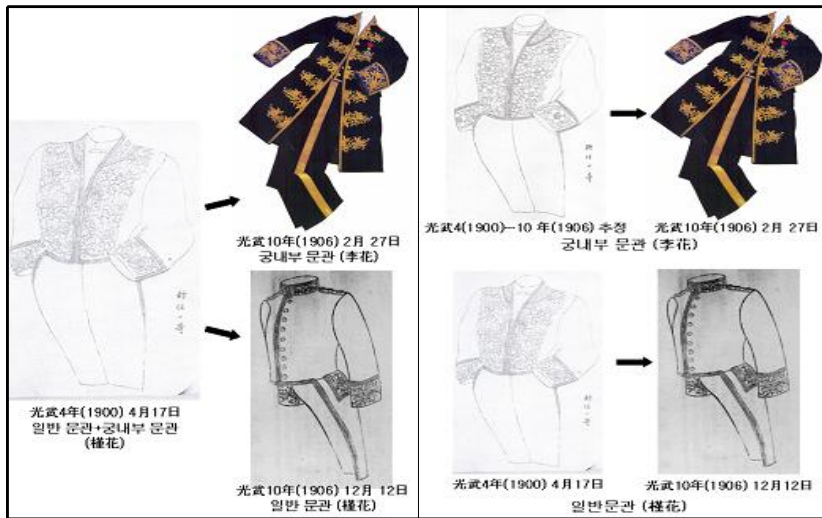
65) 『법규유편』에 의하면 1905년 1월 16일에 ‘문관복장규칙’ 제3~9조를 개정하였다(內閣記錄課, 앞의 책, 308쪽: “(光武)九年一月十六日에 第三條로 九條까지 改正호고”) 하는데, 다른 조항은 모두

제정되기 이전인 1905년에 이미 일반 관원의 대례복과 구별되어 있었으며, 당시 No4375와 같은 대례복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따라서 위 두 가능성을 종합하면, No4375와 같은 이화를 주요무늬로 하는 대례복이 1905년 1월을 즈음하여 제도화 되었을 것이며, 1900년 4월에서 1905년 1월 사이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 1910년 이후의 이왕직 관원이 입었을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때는 일반문관 대례복과 같은 복식을 입는다 하였으므로 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1900년 문관 대례복을 제정할 때, 혹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궁내부 대례복이 별도로 제정되었으며 『관복장도안』 No4375가 그 도식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자료에 의하면 <그림 9>처럼 1900년에 제정된 무궁화를 주요무늬로 하는 일반문관 대례복을 궁내부 대례복으로 함께 입다가 1906년에 일반문관 대례복과 궁내부 대례복으로 구별하나, No4375를 근거로 보면 <그림 10>처럼 1900~1906년 사이에 이화를 주요무늬로 하는 별도의 궁내부 대례복이 있었

<그림 9> 기존 자료로 파악되는
1900년대 大禮服의 변화

<그림 10> 『관복장도안』 No4375를 근거로
추정한 1900년대 大禮服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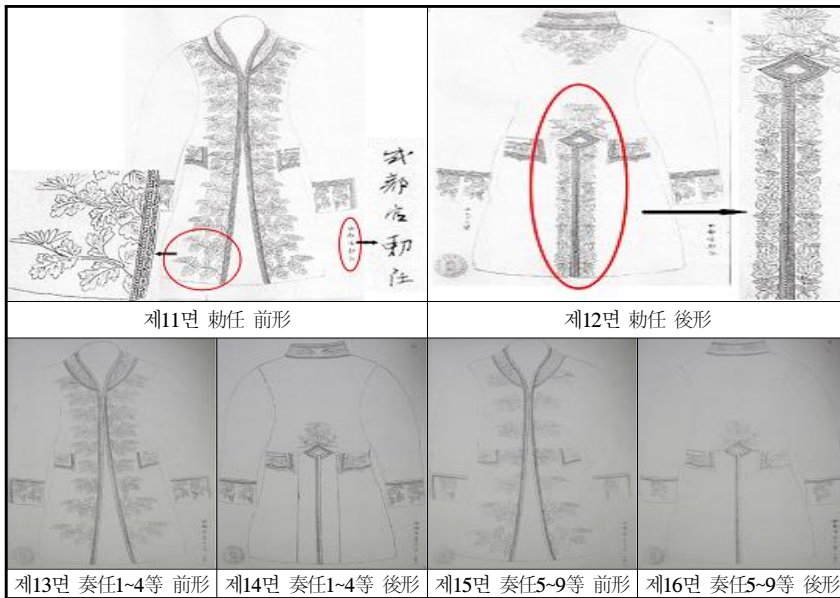
개정 내용이 있으나 제9조와 관련된 것은 없다(<표 2>참조). 따라서 이 때 제9조가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05년을 즈음한 시기에는 이러한 대례복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하여 1900년 문관 대례복에서 무궁화를 사용한 것이 1906년 12월의 개정에서 그 맥이 이어지듯, 이화를 사용한 궁내부 대례복은 1906년 2월의 개정에서 그 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 1906년 제정 大禮服과 No4373 中式部官 禮服

No4373은 총23면⁶⁶⁾이고, 제11~16면에는 7유형의 복식 중 세 번째 유형(그림 11)인 코트형태의 옷이 있고, 착용신분은 ‘式部官’으로 명시되었다. 따라서 이 제3유형의 복식을 ‘式部官 禮服’이라 하겠다. 식부관 예복인 코트에는 주요무늬로 菊

<그림 11> 藏書閣 所藏 『官服章圖案』 No4373 內 式部官 禮服



66) 『官服章圖案』을 처음 학계에 소개한 논문(최규순·김은정, 앞의 논문, 60쪽)에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제공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No4373이 총24면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후에 원본 확인 결과 제24면으로 판단했던 것은 이 자료를 넣어두었던 봉투였음을 확인하였다. 또 마이크로필름에서 제공되지 않는 양복점 명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No4373은 총23면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봉투와 명함이 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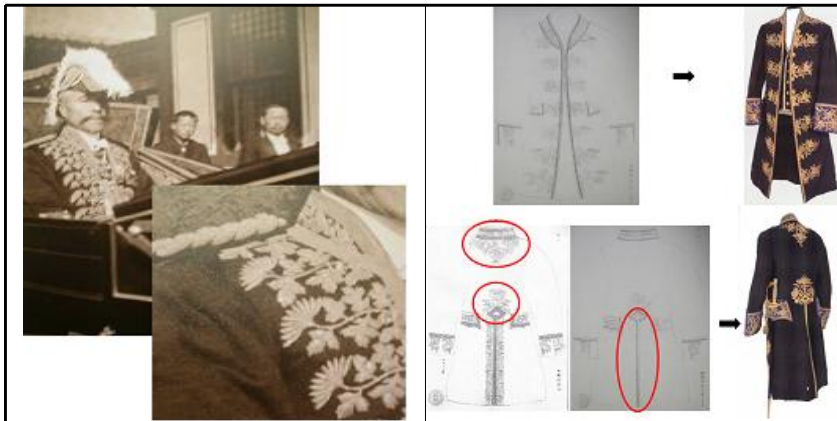
화가 쓰였는데, 앞길·뒷길·소매 등의 무늬 수로 신분을 구별한다. 각 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1~12면에는 척임관의 코트 앞모습과 뒷모습이 있다. 앞길에는 꽃과 잎으로 구성된 무늬가 좌우 양쪽으로 각각 13줄기 있고, 소매에는 2줄기가 있다. 뒷길에는 등에 2줄기의 꽃과 잎이 있고, 허리 위부분에 3줄기가 있으며, 그 아래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에 각각 7줄기씩의 꽃과 잎을 세로로 표현하였다. 주머니의 꽃 무늬는 칙·주임이 모두 같고, 다만 테두리 표현에서 주임이 간단하다. 제13~14면에는 주임1~4등의 코트 앞모습과 뒷모습이 있다. 무늬는 앞길 양쪽에 각각 9줄기, 뒷길 허리 위부분에 3줄기가 있다. 제15~16면에는 주임5~9등의 코트 앞모습과 뒷모습이 있다. 무늬는 앞길 양쪽에 각각 7줄기, 뒷길 허리 위부분에 3줄기가 있다. 소매의 무늬는 1줄기이다. 왼쪽 주머니에는 모두 칼을 꽂을 수 있도록 트임이 있다.

식부관 예복에 쓰인 국화는 일본 황실을 상징한다. 또 착용신분으로 명시된 ‘식부관’은 일본 황실업무를 담당하던 宮内省의 관원이다. <그림 12>는 高宗 장례에 참석한 일본 皇后宮 侍從 히네노 요타로(日根野要太郎)인데 그는 No4373의 식부관 예복과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이를 통해 No4373 식부관 예복을 당시 일본에서

<그림 12> 菊花 무늬 大禮服(式部官 禮服)
高宗 장례에 참석한 日本 皇后宮 侍從
히네노 요타로(日根野要太郎). 1919.3.1.
「덕수궁 사진전: 마지막황실, 대한제국과
덕수궁」(2007.11.1~11.30.)

<그림 13> 1906년 제정 宮内府
大禮服(右)과 『官服章圖案』 No4373 内
式部官 禮服(左)의 相關性



황실 관련 직원이 실제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복식은 대한제국 시기에 서양식 복식을 제정할 때 주요 참고자료가 되었는데 No4373을 통해 궁내부 대례복은 일본 궁내성의 복식을 참고·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13> 참조). 즉 No4373 식부관 예복과 1906년에 제정된 궁내부 대례복은 다음의 사항에서 서로 관련이 있다. 첫째, 옷의 형태가 같다. 연미복 형태이던 1900년의 궁내부 대례복이 1906년에 코트 형태로 바뀌는데 이는 식부관 예복과 같은 것이다. 둘째, 무늬의 표현방식 및 배열이 유사하다. 상의 앞길에 있는 무늬를 줄기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한 줄씩 배열하였다. 또 뒷길의 등과 허리 부분의 무늬 역시 식부관 예복을 참조하여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무늬의 줄기 수로 등급을 나타낸 점이 같다.⁶⁷⁾ 넷째, 邊線의 사용이 같다.

따라서 1906년의 궁내부 대례복은 일본 궁내성 식부관의 대례복을 참고하여 주요무늬만 이화로 바꾸어 제정하였고, 『관복장도안』 No4373은 그 참고자료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의 연구를 통해 대한제국기 궁내부 대례복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 및 추정할 수 있었다.

첫째, 1894~1910년에 황실 및 왕실업무를 담당하였던 궁내부는 설립 초기에 비록 의정부 등의 일반 관부와 업무의 이원화가 이루어졌으나, 복식에서는 1900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 관원과 같은 복제를 적용받는다. 당시의 대례복은 전통양식을 유지한 오사모·흑단령·폼대·靴의 차림이었다.

둘째, 1900년대 서양식 복식 채용 이후 궁내부와 일반 관원의 대례복의 관계는 세 단계를 거친다.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4호 ‘文官服裝規則’과 제15호 ‘文官大禮服製式’이 반포되면서 일반 문관복에 서양식 복제가 채택된다. 이 때 ‘規則’

67) 다만 식부관 예복에 비해 1906년의 대례복이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규정된 점은 차이가 있다. 즉 式部職 직임이 13줄, 주임 1~4등이 9줄, 주임 5~9등이 7줄의 무늬를 사용하였음에 비해, 궁내부 대례복은 친임 11줄, 직임 9줄, 주임 7줄을 사용하였다.

제14호에서 궁내부 관원 역시 이를 따를 것을 규정하여 兩者의 대례복은 전통양식을 유지할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제도를 적용받는다. 그 후 1906년 2월 27일에 반포된 ‘宮內府本府及禮式院禮服規則’과 ‘宮內府本府及禮式院大禮服과 小禮服製式’으로 일반 관복과 궁내부 관복은 구별된다. 그러나 1910년 4월 궁내부가 폐지되고 이왕직이 들어서면서 다시 같은 복식을 입는다. 이렇게 1906년 2월의 제도는 궁내부 관원에 대한 복제이므로 이를 <그림 2>처럼 일반 관원의 복제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 1900년대 궁내부와 일반 관원의 대례복은 각각 <그림 9>의 변천을 보인다.

셋째, 1900년의 서양식 궁내부 대례복은 연미복 형태의 복식 一襲으로 연미복 형 상의, 하의[胴衣], 袴, 帽, 劍 등으로 구성된다. 1906년의 대례복은 후록코트[厚祿高套] 형태의 복식 일습으로 상의가 코트형인 것을 제외하면 1900년의 구성과 같다. 각 복식의 세부형태는 신분에 따라 달리하였다.

넷째, 자료상으로 드러나는 궁내부 대례복의 변천은 <그림 9>와 같으나, 본고는 장서각에 소장된 『관복장도안』을 근거로 이와 다른 <그림 10>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관복장도안』 No4375의 구성·세부형태 등이 1900년 제정된 문관 대례복의 도식인 No4372·4와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이들 자료가 서로 다른 시기에 제정된 제도로 보기 어렵다. 또 1900년의 ‘문관복장규칙’ 중 궁내부 관복과 일반 관복이 같은 것으로 규정한 제9조가 1905년 1월에 폐지된다. 따라서 1900년 4월의 문관복 제정 당시, 혹은 1900년 4월~1905년 1월에 일반 대례복과 별도로 궁내부 대례복이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 복식의 형태는 같고 주요무늬만 무궁화와 李花로 차별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05년 1월 즈음에 이러한 대례복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궁내부 대례복이 1906년에 일반문관 대례복과 구별되기 이전에 별도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후 보충자료의 발굴과 함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1906년에 궁내부 대례복을 제정할 때 『관복장도안』 No4373과 같은 일본 궁내성 式部官 예복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궁내성 관원의 대례복이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 무늬를 사용함에 비해 궁내부 대례복이 이화 무늬를 사용한 점을 제외하면 兩者는 옷의 형태와 무늬 배열 방식이 같아 서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한제국시기 궁내부 대례복은 이전의 전통을 이어 일반 대

례복과 구별되지 않는 지속성이 있었고, 후에는 당시의 정치체제에 부응하여 일반 대례복과 분리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참고문헌

- 『高宗實錄』; 『純宗實錄附錄』; 『大韓禮典』; 『法規類編(元)』(內閣記錄局, 『法規類編』, 1896); 『法規類編』(內閣記錄課, 『法規類編』, 1908); 『官報』 (『舊韓國官報』(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
- 宮內府大臣官房調査課, 『宮內府規例』, 1910.
- 『官服章圖案』 No4372~4375, 장서각.
- 『大明會典』.
- 독립기념관 소장 사진자료(자료번호: 3-004416-218).
- 『덕수궁 사진전: 마지막황실, 대한제국과 덕수궁』. 덕수궁 석조전, 2007.11.1~11.30.
- 고부자, 『우리생활 100년·웃』. 서울: 현암사, 2001.
- 劉頌玉, 『韓國服飾史』. 서울: 修學社, 1998.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대출판부, 1977.
- 유희경·김문자, 『(개정판)한국복식문화사』. 서울: 敎文社, 1998.
- 柳喜卿·李康七·許東華·李順子, 『大韓帝國時代 文武官服飾制度(大韓帝國時代 文物展 카다로그 附錄)』. 서울: 韓國刺繡博物館 出版部, 1991.
- 경기도박물관, 『(박영숙·허동화 소장 자수특별전)실로 짠 꿈: 황홀한 우리 자수』. 용인: 경기도박물관, 200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 『藏書閣李王室古文書目錄(附 拓本, 書畫, 圖錄 목록)』.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미사진미술관(편), 『한국근대사진소장품 선집』. 서울: 한미약품, 2006.
- 김문식, 「장지연이 편찬한 『대한예전』. 『문헌과 해석』 통권 35호, 2006, 111~128쪽.
- 金美子, 「開化期の 文官服에 對한 研究」. 『服飾』 創刊號, 1977, 67~84쪽.
- 박성실, 「大司憲 鄭寅學(1839-1919)의 六梁冠 小考」. 『대한가정학회지』 44권 1호, 2006, 131~138쪽.
- 徐榮姬, 「1894~1904년의 政治體制 變動과 宮內府」. 『韓國史論』 23, 1990, 327~396쪽.
- 吳蓮淑, 「大韓帝國期 宮內府特進官의 運用」. 『史學志』 31輯, 1998, 377~408쪽.
- 李美娜, 「朝鮮時代後期 文官服 變遷에 對한 考察」. 『文化財』 18號, 1985 184~197쪽.

이왕무, 「대한제국기 純宗의 南巡幸 연구」. 『정신문화연구』 30권 제2호, 2007, 59-88쪽.

이옥,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 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7권 제2호, 2004, 59-94쪽.

崔圭順, 「藏書閣 소장 『禮服圖』 研究」. 『전통의생활연구』 1輯, 檀國大學校 傳統服飾研究所, 2007, 125-150쪽.

崔圭順, 「藏書閣 소장 『官服章圖案』의 복식사료적 가치」.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11.20. 제11회 장서각콜로키움.

崔圭順·김은정, 「開港期에서 日帝強占期 의생활연구의 현황과 전망」. 『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제1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7, 27-72쪽.

국 문 요약

본고는 궁내부(1894~1910년) 관복을 이해하는 작업의 하나로 대례복을 연구하였다. 대한제국시기 ‘궁내부 대례복’이라 함은 궁내부 소속의 친·척·주임관 중 警官과 武官 업무에 종사하던 者를 제외한 관원의 대례복을 말한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본 연구는 궁내부 관원과 일반 관원의 대례복을 구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대례복의 변화과정을 상세히 살펴 궁내부와 일반 관부 대례복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둘째, 최근 학계에 소개된 藏書閣 소장 『官服章圖案』 No4373·4375와 궁내부 대례복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즉 No4373 중의 일부 복식과 No4375에 표현된 복식이 궁내부 대례복과 관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그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궁내부는 설립 초기에 비록 의정부 등의 일반 관부와 업무의 이원화가 이루어졌으나, 복식에서는 1900년 이전까지 일반 관원과 같은 복제를 적용받는다. 당시의 대례복은 전통양식을 유지한 오사모·흑단령·폼대·靴의 차림이었다. 궁내부 대례복은 1900년 일반 문관복이 서양식 복제를 채택하고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에서 궁내부 관원 역시 이 제도를 따를 것을 규정하면서 일반 문관 대례복과 같은 연미복 형태의 복식 一襲을 입는다. 그 후 1906년 2월에 반포된 궁내부 예복에 관한 제도의 반포로 일반 관복과 구별되는데, 이때의 궁내부 대례복은 코트 형태의 복식 일습이다. 1910년 4월 궁내부가

폐지되고 이왕직이 들어서면서는 다시 일반 문관과 같은 복식을 입는다. 이렇게 궁내부 관복은 때로는 일반 문관복과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때로는 별도의 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처럼 일반 문관 예복제도가 1900년에 규정되었다가 1906년 2월에 改正되고, 같은 해 12월에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파악되는 자료로는 궁내부 대례복이 1900~1906년에 일반 문관 대례복을 함께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궁내부 관복이 일반 문관복과 같음을 규정한 ‘문관복장규칙’ 제9조는 1905년 1월에 폐지되고, 또 『관복장도안』 No4375의 구성 및 세부형태 등이 1900년 제정된 문관 대례복 도식인 No4372·4와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1906년 2월 이전에 이미 궁내부 대례복이 일반 문관 대례복과 차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1900년 4월의 문관복 제정 당시, 혹은 1900년 4월~1905년 1월에 일반 대례복과 별도로 궁내부 대례복이 제정되었고, 주요무늬를 무궁화와 李花로 차별화하여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1905년 1월 즈음에 이러한 대례복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1906년 궁내부 대례복을 정할 때 참고한 것은 『관복장도안』 No4373과 같은 일본 궁내성 式部官 예복이었고, 무늬만 이화로 바뀌어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 투고일 : 2008. 3. 14.

● 심사완료일 : 2008. 5. 29.

● 주제어(keyword) : 大韓帝國(Daehan Empire), 宮內府(Gungnaebu), 大禮服(the court dress), 『官服章圖案』(*Guanbokjangdoan*: sketches of officials' Western-style costume), 李花(a pear-blossom pattern).